

감사위원회 규정



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

감사위원회 규정

관리번호	B09MG-004
개정번호	00
개정일자	2019.03.25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원회는 본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3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,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당해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.
- ②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.

제 6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

감사위원회 규정

관리번호	B09MG-004
개정번호	00
개정일자	2019.03.25

-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數人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(회의)

위원회는 3 월에 1 회 이상 개최한다.

제 8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6 조 제 3 항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 10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부의사항)

감사위원회 규정

관리번호	B09MG-004
개정번호	00
개정일자	2019.03.25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-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- (2)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-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-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- (5)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
3.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

- (1) 업무·재산 조사
- (2) 자회사의 조사
- (3) 이사의 보고 수령
- (4)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 대표
- (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 시 소송 제기 결정 여부
- (6) 감사계획 및 결과
- (7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- (8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
- (9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- (10) 외부감사인(이하 '감사인'이라 한다) 선정 및 해임
- (11) 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·개정
- (12)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·개정
- (13) 선정된 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
- (14)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- (15)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,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
- (16)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(17)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
감사위원회 규정

관리번호	B09MG-004
개정번호	00
개정일자	2019.03.25

- 4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

제 12 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감사인의 선임 등

제 14 조(선임)

- ① 회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 개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감사인의 변경)

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 월 이내 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(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

감사위원회 규정

관리번호	B09MG-004
개정번호	00
개정일자	2019.03.25

제외한다)

2.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3.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(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받아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4. 기타 감사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제 16 조(감사인의 해임)

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후 3 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.

1.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
2.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3.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
4.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
5.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3 조에 해당하는 경우

제 17 조(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)

-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("이하 전기감사인"이라 한다)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 16 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을 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독립성확보)

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,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
제 19 조(의견교환)

감사위원회 규정

관리번호	B09MG-004
개정번호	00
개정일자	2019.03.25

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
제 5 장 보 칙

제 20 조(감사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21 조(전담부서의 설치 등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,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, 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 22 조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